제785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국토교통부)	1.불법하도급 등록말소 강화(강화)○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도 3진 아웃제에 포함하여 건설업 등록말소	1.비중요
2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개정안 (산림청)	1.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기준(신설) 산림작업자 안전거리 센서 등의 품질인증 기준 신설	1.비중요
3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취소(신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도입하고, 그 지정요건과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	1.비중요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토교통부)	1.카지노업 양수·합병 사전인가제 도입(신설) 카지노업을 양수하거나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제주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함. * 1개월이내 사후신고에서 사전인가로 변경 2.소규모 사육시설 방역 조치사항(신설) 소규모 사육시설(10㎡ 미만)은 등록이나 허가없이 가능하나,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해 소규모 사육시설 준수 방역 설비 및 소독실시 등 방역 조치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보존자원 반환 및 처벌 규정(신설)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도조례로 정하는 보존자원은 도안에서 허가 없이 매매 가능하도록 하고 도외 반출허가 대상 보존자원은 도외에서 매매 금지, 도외에서 불법 매매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보존자원 반환 조치 등 근거 마련 4.굴착행위 허가제(강화) 지하수가 주요 식수원인 제주도 특성을 감안하여, 신고사항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해 허가제로 변경하고,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굴착행위를 할 경우는 벌칙 부과	
5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국토교통부)	1.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신설)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기준을 강화(최소점수를 현행 10점 에서 25점으로 상향)	1.비중요
6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보건복지부)	1.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강화) 인터넷 매체에서 건강, 의학정보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도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로 규정	1.비중요
7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개정안 (해양수산부)	1.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 사항(신설) 동일한 저축성공제임에도 보험료 납입형태에 따라 환급률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일시납 저축성공제의 계약체결비용을 비일시납 저축성 공제와 동일한 비율만큼 최소 15개월간 적립금에서 균등하게 차감하도록 개선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5.비중요 6.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보장성공제의 공제료 추가 납입 한도 축소(강화) 공제계약자가 보장성공제를 저축성공제로 오인하지 않도록 보장성공제의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 2배에서 1배로 축소 3.표준해지공제액보다 초과한 계약체결비용 적용 상품 규제 강화(강화) - 표준해지공제액보다 초과한 계약체결비용 적용 상품은 해지공제액 비교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기재사항으로 추가 -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하여 표준해지공제액보다 초과한 계약체결비용 적용 상품에 대한 해당 상품 사업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공시 추가 4.무(저)해지환급형 공제 설계 제한(신설)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입기간 중 표준형공제 대비 50% 미만인 무저해지환급금 공제에 대하여 전공제기간 동안 표준형 공제의 환급률 또는 100%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으로 상품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5.장기손해공제 및 제3공제 해지공제액 산정 기준 일원화(신설) 생명공제와 장기손해공제 및 제3공제의 표준해지공제액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산정기준을 일원화하여 상품별로 유불 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해약환급금 개선 및 보험료 인하 유도 6.상품 공시사항 추가(강화) 계약자의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공제계약의 불완전 판매비율, 공제금 부지급률, 공제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건수 등 비교공시 추가	
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소방청)	1.행정상 제재처분의 가중요건 정비(신설) * 행정상 제재처분의 가중요건 정비(안 별표 2 제1호라목) 가중된 행정처분의 차수를 정하는 기준을 정비함 2.위험물운반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신설) * 운반자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 신설(안 별표 24 제1호·제5호) 위험물 운반자에 대한 교육시간, 교육시기 등을 정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안전교육(강습교육)의 과목을 정하는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	1.비중요 2.비중요
9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1.민자도로사업자에 유지관리계획 수립의무부과(신설) 가. 유지관리계획 포함될 세부사항(안 제15조의4 / 신설 / 비용없음) - 민자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영업·휴게시설 운영 및 민원 관리, 교통안전 등)을 구체화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나.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15조의5 / 신설 / 비용없음) -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 유지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연간 운영 목표 및 추진방향의 설정, 연간 유지·관리 계획 등)을 구체화	
10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1.민자도로사업자에 부가통행료 고지의무 부과(신설) 민자도로 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하도록 함 2.민자도로사업자에 유지관리계획제출 의무부과(신설)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제출 방법 및 전문기관 검토 요청 규정	1.비중요 2.비중요